

의안번호	2204796
의 퇴 인	박수영의원
회 답 일	2024.11.7.
추계번호	24E4432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를 상향조정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4년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조정할 경우 재정수입 감소는 다음과 같음
- 재정수입 감소는 2025년 3,652억원으로 예상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

(단위: 억원)	
	2025
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상향조정 (안 제126조의2②)	-3,652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126조의2 제2항 (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)	○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상향조정, 전년대비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율 상향조정 － (현행)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40%, 2024년 사용액이 전년대비 5% 이상 증가한 경우 5% 초과사용분에 대하여 소득공제율 10% 적용 － (개정안) 2024년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80%, 2024년 사용액이 전년대비 5% 이상 증가한 경우 5% 초과사용분에 대하여 소득공제율 20% 적용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26조의2제2항 (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)의 2024년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상향조정	○	추계
2	안 제126조의2제2항 (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)의 2024년 사용분 중 전년대비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율 상향조정	×	미추계 (기술적 사유로 비용추계 곤란)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의 부칙(공포한 날부터 시행)을 반영하여 2025년 1월 1일 시행하는 것으로 가정
 -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소득 공제율을 상향하는 안으로 이에 대한 세수효과는 2024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시행되는 2025년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(징수기준)
 - 다만, 전년 대비 소비 증가분에 대하여 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안의 경우 자료에 의한 객관적인 추계가 어려워 추계대상에서 제외
 - － 전년대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증가한 자의 수, 이들의 소득세 신고내역 등에 대한 자료가 부재하고,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자료에 의한 객관적인 추계가 불가능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(1) 감면 실적

- (감면실적) 2024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액은 4조 1,183억원임¹⁾

- 2021년과 2023년 조세지출액은 전년도 귀속소득에 대한 조세지출 실적치로, 각각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세지원 대책,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을 상향하여 적용함에 따라 해당연도 조세지출 실적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

[표 2]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지출액

(단위: 억원, %)

	2018 실적	2019 실적	2020 실적	2021 실적	2022 실적	2023 실적	2024 잠정
조세지출액	21,176 (14.2)	22,553 (6.5)	24,698 (9.5)	31,882 (29.1)	31,675 (-0.6)	39,458 (24.6)	41,183 (4.4)

주: ()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

자료: 기획재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연도

(2) 추계 방법

□ (추계 방법) 총급여규모별·공제항목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를 이용하여 추계

- 2022년 귀속 총급여규모별 전통시장 사용분에 공제율 인상분(40%p) 및 한계세율을 적용하여 세수효과 추계
 - 연간 총급여규모별 전통시장 사용액이 월별로 균등하게 분포한다고 가정, 연간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현행보다 40%p 높은 80% 공제율 적용하여 추계
 - 신용카드 공제항목의 공제율 변경에 따른 공제금액의 변화는 개인별 기본공제 한도, 기본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공제대상금액 중 추가공제 가능 금액(한도 초과분과 대중교통·전통시장 및 도서·공연비 등 공제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) 등

- ① [표 2] 기준 ① 2018년(2017년 귀속)부터 급여수준별로 공제한도를 차등 적용하고, 중고자동차 구입분이 공제대상에 포함됨
- ② 2019년(2018년 귀속)부터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30%에서 40%로 인상되었으며,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·공연비 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가 신설됨
- ③ 2021년(2020년 귀속)에는 2020년 3월과 4~7월기간 동안 사용액에 대하여 각각 30~80%, 80%의 공제율을 적용(기존 15~40%)하고, 총급여규모별 공제한도를 30만원 확대함
- ④ 2022년(2021년 귀속)에는 공제항목별 공제율이 정상화(15~40%)되고,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대비 5%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 사용분에 대해 10% 공제율 추가 적용
- ⑤ 2023년(2022년 귀속)에는 소비활성화를 위해 2022년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분이 전년대비 5% 이상 증가한 경우, 5% 초과 사용분에 대해 100만원 한도로 각각 20% 추가공제 적용
- ⑥ 2024년(2023년 귀속)에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('23년 하반기 사용분부터 적용) 추가, 공제한도 통합 등 조정, 2023년(4~12월)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50%, 2023년(1~12월)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80%로 한시 상향조정

에 따라 달라지지만, 자료의 한계로 총급여규모별·공제항목별 신용카드 사용액 집계자료를 이용하였으며, 1인당 전통시장 공제율 상향분(40%p)을 적용한 금액을 모두 공제받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
- 2022년(기준연도) 기준 세수효과 추계 후, 향후 세수효과는 기준연도 세수효과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인원 증가율 및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추계
 - － 향후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 인원은 2018~2022년 연평균 증가율(4.8%)로 증가하고,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비자물가상승률²⁾을 따라 증가할 것으로 가정

(3) 추계 결과

-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한시 상향할 경우 소득세수는 2022년 기준 3,137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

2) 2023년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의 「2025년 NABO 경제전망 2024~2028」('24.10.)의 전망치 활용

[표 3]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조정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(2022년 기준)

(단위: 명, 백만원)

총급여액 규모	국세통계연보		1인당 전통시장 사용금액 ³⁾	1인당 추가공제액	현행 1인당 과세표준 ⁴⁾	한계세율 (%)	세수효과 (억원)
	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 인원 ¹⁾	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인원 ²⁾					
	A	B	C	$D=C \times 40\%p$	E	F	$G=-(D \times F) \times B$
합계	10,652,959	9,389,882	0.47	—		—	-3,137.3
1천만 이하	405	—	0.04	0.02	4.6	6%	0.0
1.5천만 이하	7,399	2,208	0.08	0.03	5.2	6%	0.0
2천만 이하	161,337	138,578	0.17	0.07	7.2	6%	-5.5
3천만 이하	1,656,074	1,516,764	0.30	0.12	11.3	6%	-109.5
4천만 이하	1,833,031	1,665,420	0.35	0.14	17.0	15%	-350.5
4.5천만 이하	866,776	792,887	0.40	0.16	21.6	15%	-188.2
5천만 이하	787,778	719,792	0.44	0.17	24.9	15%	-188.1
6천만 이하	1,318,904	1,197,200	0.50	0.20	30.1	15%	-356.6
8천만 이하	1,736,426	1,554,540	0.58	0.23	41.2	15%	-540.5
1억 이하	1,027,398	882,722	0.65	0.26	58.2	24%	-547.9
2억 이하	1,105,029	854,760	0.66	0.26	95.8	35%	-790.8
3억 이하	99,147	51,415	0.60	0.24	197.4	38%	-47.0
5억 이하	36,829	11,313	0.57	0.23	327.2	40%	-10.4
10억 이하	12,761	1,950	0.58	0.23	607.2	42%	-1.9
10억 초과	3,665	333	0.62	0.25	1,964.3	45%	-0.4

주: 1)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있는 자의 총급여 규모별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 인원

2)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있는 자의 총급여 규모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인원

3) 총급여 규모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을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 인원으로 나눈 값

4)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있는 자의 총급여 규모별 1인당 과세표준

자료: 국세청 제출자료 및 2023년 국세통계연보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2022년 귀속 기준 세수효과에 2022년 이후 기간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인원 증가율 및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추계할 경우 2024년 귀속 기준(2025년 연말정산 시 세수효과 발생) 세수효과는 -3,652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

(단위: 억원)

	2025
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상향조정 (안 제126조의2②)	-3,652

IV. 부대의견

□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박지원	박연서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지원	02-6788-4662	jwpark1209@assembly.go.kr